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2.
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13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0일

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○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사항으로 새마을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“불미스러운 행위”, “품행불량”이라는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정립 하며,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조항의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,

○ 2001년 10월 20일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이 불필요하게 됨

나. 주요내용

○ 제1조(목적) 중 “중·고등학교”를 “고등학교”로,

○ 제4조(추천) 중에 “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(이하 “구문고지부회장”이라 한다)”로 추천 확대

○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“불미스러운 행위”, “품행이 극히 불량” 문구를 각각 삭제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,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합 의 : 해당없음.

○ 기 타

- 입법예고 : 2006. 1. 19 ~ 2006. 2. 8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, 불명확한 지급 정지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다만, 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에서 유공자 장학생, 우등생, 특기생으로 규정되어 있고, 제5조(선정)에서 심사기준으로 서훈, 표창, 사망 또는 부상, 기타 유공을 들고 있으며,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가사형편의 반영이 미미할 뿐더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한다면,
- 현행 제1조의 조문중 “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” 라는 조문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아울러 제3조 제1항도 “장학금의 지급은 남·녀 새마을지도자” 에서 “장학금의 지급은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·녀 새마을지도자” 로 개정하여 봉사기간이 비교적 긴 새마을지도자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가사형편의 반영이 미비할뿐더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안 제1조 중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삭제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1조 중 “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” 를 삭제

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